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255호(號) 1931(昭和 6)년 3월 14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4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3월 1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제10조(條)제3항(項) 화물운송장(貨物運送狀)의 양식(樣式) 중(中) 「경유선명(經由線名)」란(欄)을 「경유역명(經由驛名)」란(欄)으로, 동(同) 태선구획(太線區畫)을 세선구획(細線區畫)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동(同) 공백란(空白欄) 좌견상부(左肩上部)에 「O」인(印)을 첨부(添附)함. 동(同) 양식(樣式) 왼쪽기재[左方記載] 주의(注意) 중(中) 「O인(印)이 있는 개소(箇所)는 하송인(荷送人)은 다음의 경우에 한(限)하여 기입(記入)할 것」의 아래[下]에 「경유역명(經由驛名)은 운송경로(運送徑路) 2도(二途) 이상(以上) 있는 경우」를 추가(追加)함.